

	<h2 style="margin: 0;">시설관리과 규정</h2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6. 3. 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시설물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부서는 대학 시설관리과(이하 "시설관리과"이라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.

제4조(운영방침) ① 시설관리과는 대학 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운영 한다.

② 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·운영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설연구소를 둔다.

제5조(운영조직) ① 시설관리과는 행정지원처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
 - 시설 및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
 -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 -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
 -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2. 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

제6조(시설관리과) 대학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처장이 총괄책임자로 한다.

1. 시설물 관리 및 보수
2. 기타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보칙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, 별도의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